(재)거창군장학회 공고 2025 - 51호

2025년 2학기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공고

(재)거창군장학회에서는 지역출신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도 2학기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0.

(재)거창군장학회



1. 지원대상

가. 지원기준(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 학년 대학생

나. 지원기준

구분	내 용	비고
①자격	 ▶ 만 30세 미만 최종 학년 대학생(1995년 11월 11일 이후 출생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해당 학기 신청자 	▶ 최종 학년 대학생 : 4년제 대학 4학년, 2년제 대학 2학년
②거주	 ② 학생 : 1)과 2) 중 1개 이상 충족 1)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거창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한 사람(재학기간 동안 거창군에 주소) ④ 가족 : 1명 이상의 가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이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가족은 등록금을 지원 받는 동안 거창군에 주민등록 유지
③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외국대학, 대학원 제외
④성 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2.5학점(4.5만점) 이상 취득(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 적용)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2. 지원내용

가. 대 상 : 2025년 2학기 대학교 등록금

나. 금 액: 학기당 본인부담 등록금* 최대 100만 원 한도

* 본인부담 등록금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타 장학금 등 지원 받은 금액

※ 전액 장학금 수혜 등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3. 지원금 지급

가. 시 기 : 2025년 12월 중 일괄 지급

나. 방 법: 제출한 대학생 본인 또는 가족의 통장 계좌로 입금

※ 지급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25. 11. 13.(목) ~ 11. 28.(금) 09:00~18:00(업무시간 중)

※ 점심시간 12:00~13: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원칙)

다. 제 출 처 :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 : 본인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 관내 주소를 두지 않은 대학생 : 가족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제 출 서 류	비고	
	①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서식1	
	②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서식2	
	③ 한국장학재단 신청증명서	취고자하게다 바그	
	④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발급	
공통	⑤ 대학교 성적증명서	편입생, 재입학생 생략	
서류	⑥ 통장 사본	대학생 또는 가족 명의	
	⑦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가족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⑧-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대학생	
	⑧-2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가족	
해당 시	⑨ 거창군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첫 장 (생활기록부 내 학적사항 표기)	대학생	

5. 지원 제외 및 환수 사항

- 가.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나. 전액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인
- 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는 경우
- 라. 착오로 지급한 경우
- 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바.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전액 반환 후 신청가능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 시 유의사항 > --

- 반드시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1599-2000)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 본인부담 등록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 지급단위 1천원(백원단위 절사): (ex) 555,900원 → 555,000원 지급

6. 문 의 처

가. (1차) 대학생 또는 가족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읍면사무소	연락처	읍면사무소	연락처
거창읍행정복지센터	055-940-7226	마리면행정복지센터	055-940-7623
주상면행정복지센터	055-940-7363	남상면행정복지센터	055-940-7665
웅양면행정복지센터	055-940-7415	남하면행정복지센터	055-940-7713
고제면행정복지센터	055-940-7464	신원면행정복지센터	055-940-7764
북상면행정복지센터	055-940-7515	가조면행정복지센터	055-940-7815
위천면행정복지센터	055-940-7563	가북면행정복지센터	055-940-7872

나. (2차) (재)거창군장학회 ☎055-940-8813

7.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표

구 분	구 비 서 류	제출여부
	① [서식1]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② [서식2]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	()
	③ 한국장학재단 신청증명서	()
	④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u>필수</u>	⑤ 대학교 성적증명서	()
	⑥ 통장사본	()
	⑦ 가족관계증명서	()
	⑧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이력	학생 기준()
	8 구천중흑보곤 · 전세 구보이릭	가족 기준()
해당 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대학생) ⑨ 거창군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첫장 (생활기록부 내 학적사항 표기)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변	보호			
	주	소						
	대학	교명	대학(교)	학과	학년		휴대전화	
	① 등 실 L	록 금 남부액	원	②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원	③ 신청금액 (①-②)	원 ※ 학기당 최대 1백만원
지 원			공통 요건: 가목부터 다	목까지 모두	충족			
권 자			가. 30세 미만 대학생	! 🗆				
			나. 일정 학점 기준 총	충족하는 대흐	낚생 □			
	지원요건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충족 1)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2)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대학생 □						
			추가 요건 : 가족관계등 - 가족 중 1명 이상이					있는 대학생 □
	지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				(예금	주)
	관	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
가 족								
경	우 ㅈ	원금	·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 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	을 반납해야	함을	알고 있고	1 이에 동의	
(7	재)ア	· 창	군장학회 이사장	_	청인:			(서명 또는 날인)

※ 해당 학기 재학 중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 중지 시 즉시 통보해야 함.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등록금 지원을 위한 적격 여부 판단, 중복지원 판단 확인 및 지급 후 사후관리
-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교, 주소, 장학금 지원정보 등
 - 나. 학생 가족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부터 5년(다만, 5년 후에도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보유·이용 가능.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 4.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거창군, (재)거창군장학회, 한국장학재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5.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대학생의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금 지급 (미지급) 확인서

	성	명			생년월	일	
	직	장 명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장 주 소 장 명)					
	등 록 금 지원여부		□여	지원받는 금	금액 원		장에서 지원받는 경우 원 금액 기재
			□부	I부		※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으면 "부"에 체크	
÷L AU	성	명			생년월일		
학 생	학	교 명		āl ¬	_	ı.	중된크
	•	ж о		학교	<u> </u>	박 과	학년
받고 ?	이 우 있지	니와 같이 않음을 ^호	ት인하 며	로부터 학생으	l 등록금을 사실과 다릙	· · 지급 를 경우	(부분지급) 또는 지급 ² 지원금의 전액 또는
받고 🤉	이 우 있지	니와 같이 않음을 ^호	ት인하 며	로부터 학생으 , 위 내용이 / 이에 동의하며	l 등록금을 사실과 다릙	· · 지급 를 경우	(부분지급) 또는 지급 ² 지원금의 전액 또는
받고 (일부를	 이 유 있지 - 반닡	니와 같이 않음을 ^호	ት인하며 을 알고 : :	로부터 학생으 , 위 내용이 / 이에 동의하며	시 등록금을 사실과 다흵 후인서를	· 지급 중 경우 · 제출	(부분지급) 또는 지급 ² 지원금의 전액 또는 합니다.
받고 (일부를	 이 유 있지 - 반닡	어와 같이 않음을 ^호 하하야 함을 사업장명 사업주 (대표자)	ት인하며 을 알고 : :	.로부터 학생으 , 위 내용이 / 이에 동의하며 년 월	시 등록금을 사실과 다 취 확인서를 기 일	· 지급 중 경우 · 제출	(부분지급) 또는 지급 ² 지원금의 전액 또는 합니다.